의 안 번 호

1676

【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】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9. 18.(금) 문희성 의원 외 10명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11. 6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12. 7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(주민자치국장 이상찬)

가. 제안이유

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 및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에 대하여 운영 및 사업 지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할한 통일정책 관련 사업을 지원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의 운영·사업 등 지원(제1조)
- 보조금 지원 가능한 사업 항목별 규정(제2조)
-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(제3조)
- 지도 및 감독(제4조)
- O 인력 및 사무의 행정적 지원(제5조)
- O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(제6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제29조 제1항(지역회의 등)
-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」제3조(대행기관 등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영숙)

-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에 대하여 운영 및 사업 지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원활한 통일정책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하여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

- 제29조(지역회의 등)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 특별자치도·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, 시·군·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. 다만,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.
 -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1.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
 - 2. 지역회의의 조직 · 운영
 - 3.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

제3조(대행기관 등)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(이하 "대행기관"이라 한다)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한다.

-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
- 2.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(이하 "지역회의"라 한다)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 및 같은 조에 따른 지역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

- 3.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-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.